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	제정일자	2024.1.2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동국제약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고 한다)의 이사회 내에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-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(주주제안권), 제542조의6 제1항 . 제2항(소수주주권)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- ①위원회 위원(이하 ” 위원” 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 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	제정일자	2024.1.2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제5조 (위원장)

-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3항에 의거한다.
-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7조 (소집절차 등)

-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, 안건, 장소 등을 정하여 개최일 3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의 검토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도 제 3 항 내지 제 4 항을 준용한다.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	제정일자	2024.1.24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

제8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1. 관련 임직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2. 외부인사의 회의 출석 및 관련 의견 진술 및 청취 3. 제 1 호 및 제 2 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(결의방법)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것도 포함한다 ②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심사 후 재결의 할 수 있다. 제10조 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(이사회 보고 의무) 위원회는 검토 및 토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취합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-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	제정일자	2024.1.2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제12조 (의사록)

-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3조 (간사)

-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